##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99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김태선·김남근·박홍배

정준호 • 이학영 • 윤종군

한민수・박 정・김태년

박해철 • 맹성규 • 윤준병

이용우 · 김주영 의원

(14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 달리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

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 법률 제 호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10일간"을 "30일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②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	
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	
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	<u>30일간</u>
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 ②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③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	<u>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u>
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	
<u>난 날부터</u>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	
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	
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	

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	
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